##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4

발의연월일: 2021. 4. 15.

발 의 자:이종배·조수진·서병수

김승수 · 하태경 · 김예지

곽상도 · 김성원 · 김은혜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학입학제도에 따르면 대학 진학 희망자는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비"를 "교육비(「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u>교육비</u> 를 지급한	교육비(「고등교육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u>다)</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